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4시 11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지정해제	3

지정해제

2014.04.17 조회수 59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22
담당부서	문화예술과
상위법령	문화재보호법 제28조
조례	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제10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4-11-18
규제시행/폐지일	2004-11-18
규제내용	제10조(지정 해제) ①시장은 지정·인정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, 보호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. 1.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. 보존·보호·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.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4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20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24

Yeosu Web Contents

